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elcome to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at the KDI, a gatekeeper to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1.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입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2.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함.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 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임.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기타 비투자 재정분문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

3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4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면제사업

1 국가 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하고 있음.

-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기금 사업 중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수입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수익성 분석결과 또는 타당성 조사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함.

1.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음.

4. 선정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2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 함.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3 직권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대상사업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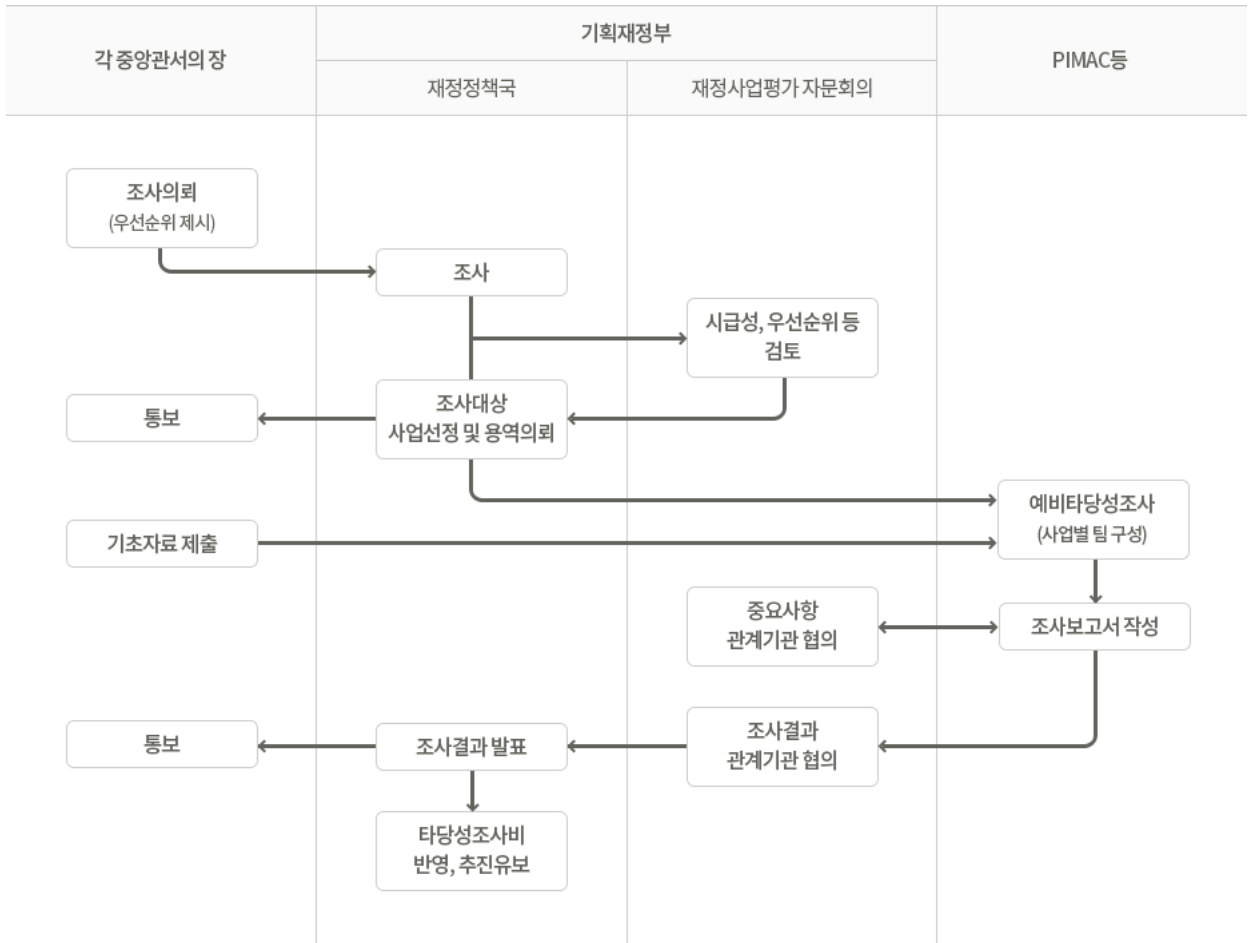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함.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함.

단,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 수행함.

4. 선정 및 수행체계



5. 분석내용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조사대상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함

2 경제성 분석

-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
- 수요추정: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
- 재무성 분석: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

3 정책적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의 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준비정도, 추가평가 항목 등을 평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자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추가평가 항목 등을 평가
- 사업특수 평가항목: 해당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항목 등을 평가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경제성분석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평가 항목 등을 평가

5 AHP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6. 수행현황

1999~2016년까지 총 653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됨.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사업이 각각 229건 및 117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건축 사업을 포함한 기타 비정형 사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분야별 수행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1999	11	2	1	4	1	1	20
2000	11	7	5	2	1	4	30
2001	20	14	1	5	-	1	41
2002	9	8	2	2	5	4	30
2003	10	7	3	5	5	2	32
2004	24	13	1	2	3	12	55
2005	11	6	2	1	3	7	30
2006	27	10	5	5	1	4	52
2007	30	5	1	2	1	7	46
2008	12	2	4	3	2	15	38
2009	22	5	2	2	12	20	63
2010	7	14	2	1	2	22	48
2011	6	5	2	11	5	14	43
2012	7	7	5	6	5	5	35
2013	8	-	1	2	1	4	16
2014	6	4	2	12	2	8	34
2015	3	3	2	7	-	3	18
2016	5	5	2	3	4	3	22
계	229	117	43	75	53	136	653

- * 주: 1) 2016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공항, 정보화, R&D 부문,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건축부문은 2011년부터 별도 구분되며 기존 사업은 기타 실적으로 구분됨.
 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간이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